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
온라인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

2021. 1.

국 토 교 통 부
건 설 산 업 과

목 차

1. 추진배경 1

2. 운영방식 1

3. 단계별 운영방안 2

4. 세부절차 3

5. 운영기준 3

6. 기타사항 4

1 추진배경

◈ **온라인 비대면 교육** : 공간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 웹 기반의 강좌
* 강사-교육생간 질의응답, 퀴즈 등 학습관리를 포함하며, 학습커뮤니티, 토론 등 **양방향 학습 가능**

○ (**코로나19 대응**) 대면교육으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증가하여 **감염병 확산 방지**를 위한 **온라인 비대면 교육 도입** 필요

○ (**교육 활성화**) 교육생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**시간, 공간제약이 없이** 이수가 가능한 **온라인 교육 도입 필요성** 증대

⇒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위한 **11개 전문교육기관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**

2 운영방식

○ (**교육방식**)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(Zoom 등)을 통한 **교육생과 강사 간 온라인 비대면 교육** 실시

○ (**교육절차**) 인터넷·전화 등을 통한 **교육접수** 후 교육생들에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**사용 매뉴얼**(붙임1 참조) **안내 후 교육 실시**

*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사전에 강사들에게 온라인교육 프로그램(Zoom) 사용법 및 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사전교육 실시

○ (**교육접수**) 각 전문교육기관별 **홈페이지 및 메일** 등을 통해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사진 등 **개인정보에 대해 동의**를 받아 접수

*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입력 및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전문교육기관은 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동의서(붙임2 참조)를 통해 교육생 신원 확인

○ (**교육장비**) 강사는 노트북·데스크탑(웹캠, 헤드셋 필요)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, 교육생은 **노트북·데스크탑**(웹캠, 헤드셋 필요)·**스마트폰**으로 수강이 가능

* 1회 교육 시 교육진행 장비 1대, 사무원 보조 장비 1대 총 2대 필요

○ (**교육인원**) 1회 최대 수강인원 50인

3 단계별 운영방안

○ (**교육단계**) 현장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**병행하여 운영**하되, 코로나19 단계(사회적 거리두기)에 따라 **운영방식을 변경**하여 실시

- **지역별 방역수칙을 준수**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, 교육운영 방안보다 **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** 시 **강화된 거리두기 준수**

< 코로나19 단계별 교육운영 방안 >

단계	내용	비고
1.5 이하	지역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 + 비대면 교육 실시 (출장, VR 교육 포함)	▲(현장교육)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거리두기, 소독 등
2	각 전문교육기관 별 전체 교육일정 중 30% 이상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	▲(현장교육) 거리두기, 소독 강화
2.5	각 전문교육기관 별 전체 교육일정 중 50% 이상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	
3 이상	전체 비대면 교육 실시	

* 교육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엄격한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준수

4 세부절차

접수	○ 인터넷 홈페이지, 전화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신청 - 성명, 등 개인정보 동의서 보관 및 교육생 수수료 납부
⇩	
안내	○ 온라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용메뉴얼 안내 - 사용메뉴얼 및 교육수강 시 유의사항 안내
⇩	
교육진행	○ 온라인 교육방을 개설(강사, 비밀번호 설정) - 교육 전에 입장 및 장비설치가 완료되도록 조치 ○ 교육방에 교육자료 게재 ○ 음성 또는 대화창으로 출석여부 확인(2회 이상)
⇩	
이수증 발급	○ 이수증 발급기준에 충족된 교육생에게 이수증 발급
⇩	
결과 보고	○ 매월 국토부, 안전관리원으로 온라인 교육 실시결과 보고

5 운영기준

○ 교육방법(1회 기준)

수용인원	강사	담당자	교육방식	이수증 발급
50명 이하	1명 이상	1명 이상	실시간 양방향 원격강의	등기우편, 방문수령

* 한 명의 강사가 같은 시간대에 대면·비대면 교육 동시 진행 불가

○ 강의시간 기준

총 학습시간	교육시간 / 휴식시간
4시간	50분 교육 / 10분 휴식

○ **이수증 발급 기준**

결과	기준
이수증 발급	교육 4시간 80% 이상 참여 시(160분)
이수증 미발급	- 교육생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경우 - 교육 시작 20분 이후 입장한 경우 - 출석여부 확인이 안 된 경우 - 타인이 대리출석 했을 경우 - 교육 중에 운전, 조종 등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 - 교육생의 집중, 태도 등 문제로 강사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- 이 외 담당자가 이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 * 사전에 미발급 조건을 교육생들에게 전달 * 교육기관은 이수증 미발급 사유가 생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 영상을 기록·보관

○ **환불기준**(환불 요구 시)

교육 시작 전	교육시간 1/4 경과 후	교육시간 2/4 경과 후	교육시간 3/4 경과 후	교육시간 3/4 경과 후
전액 환급	교육비의 3/4 금액 환급	교육비의 2/4 금액 환급	교육비의 1/4 금액 환급	미 환급

6 기타사항

○ 교육기관은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하고, 문의사항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야 한다.

○ 교육기관은 온라인교육 시작 전에 교육일정 등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하며, 안전교육 통합 홈페이지에 일정을 게재해야 한다.

○ 온라인 교육방은 타인의 입장을 제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하며, 교육생들에게 사전에 비밀번호를 안내해야 한다.

○ 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시작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교육생들의 인적사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, 분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○ 전문교육기관은 음성 또는 대화창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대화창 기록을 저장·보관한다.

○ 교육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온라인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이수증 발급에 대한 등기비용은 전문교육기관에서 부담한다. 다만, 교육생의 잘못으로 반송 이후 이수증을 재발송하는 경우 재발송 비용은 교육생이 부담한다.

○ 교육생이 수신하지 못한 이수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○ 가이드라인 이외 온라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안전관리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